

제358회 국회 (임시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부록)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3월22일(목)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서면질의】

- 신보라 위원 2
- 이채익 위원 4

【답변서】

- 국무조정실 7
- 국토교통부 13

* 서면질의서

신보라 위원

(총 1 면)

2018. 3. 22(목)

청년미래특별위원회 7차 회의 시연 질의 (신보나 의원)

1. (국무조정실) 정부 사업 중 청년 사업 분류 계획 및 청년 사업의 예산 현황.
2. (국무조정실) 정부의 사업을 분류하는데 있어 '청년 사업'을 분류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국무조정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청년 정책 실행 채널 구축에 대한 계획.
- ~~4. (국무조정실) 행정부처의 정책 개정과 연관하여~~

* 서면질의서

이채익 위원

(총 2 면)

서면제 : 이채영 의원님.

□ 추가 질의 : 빈집 활용 거주 공유제도의 근거법률 마련 여부 질의

(국원님.)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께 질의합니다.)

3123 3132

발제자께서 제안해주신 ‘빈집 활용 거주공유제도’(자료집 p. 30)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감안하면, 매매, 임대, 이사로 인한 빈집이 13만 호가 넘고 미분양과 미입주가 5만 호가 넘어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제자께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빈집정비시스템이 구축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빈집 활용 거주공유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자료집 p. 30)에 대하여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동조 제1조), 동법상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미분양주택 등이 제외됩니다(제2조제1항제1호).

동법상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제2조제1항제2호), 그 방법은 ①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제9조제1호), ②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동조제2호), ③철거(제3호), ④ 철거 후 건축물 건축하거나 일정 설비를 설치하는 방법(제4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법상 빈집정비사업으로 ‘빈집 활용 거주공유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빈 집 중 1년 이상 빈 집인 곳으로 미분양과 미입주가구를 제외하는 경우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빈집 활용 거주공유제도’가 도입되기 위하여는 별도의 근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서면답변서**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신보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신보라 위원(자유한국당)

정부사업 중 청년사업 예산현황 및 분류계획은?

(사회복지정책관실)

□ 청년사업 예산현황(청년일자리 분야)

연번	세부사업	'18년 예산(억원)
고용부	고용창출장려금-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1,930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1-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3,368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2,865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700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192
	세대간상생 고용지원	271
	실업자능력개발지원	115
	일학습병행운영지원	1,317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2	285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고보)	74
	중소기업청년인턴제	28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246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319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패키지2(청년)	1,796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구직촉진수당	1,728
	해외취업지원	424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1,848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1,706
중기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38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R&D)	43
	창업사업화지원	1,535
	벤처기업경쟁력강화	16
	연수사업	186
	창업기업자금(융자)	1,300
	창업선도대학	895
	창업인프라지원	490
	창업저변확대	562
	창업성공패키지	540
	MICE산업육성지원	4
문화부	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관광전문인력육성)	10

연번	세부사업	'18년 예산(억원)
	국민문화향유권확대	315
	문화예술교육활성화	995
	콘텐츠사업생태계조성(구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	61
	박물관진흥지원	34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353
	예술인력육성2	42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	77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118
	관광사업창업지원및벤처육성	21
외교부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ODA)	1,050
국토부	항공전문 인력양성	4
	해외인프라시장개척	28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57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R&D)	203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41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R&D)	76
	SW전문인력역량강화(R&D)	266
산자부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26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801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23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286
	대학창업펀드	150
농림부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해외인턴십지원	4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농업법인취업지원	9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ODA)	18
보훈처	취업지원	2
	취업지원	18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2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34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	58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생물자원)	13
	환경산업육성 지원인력인프라 구축(물산업)	8
합 계		30,124

※ '18.3.15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자료이며, 동 대책 예산은 집계중이며 조만간 추경으로 제출될 예정

□ 청년사업 분류계획

- 일자리 이외 분야의 청년사업 분류는 청년종합정책 수립과 함께 진행중입니다.

신보라 위원(자유한국당)

정부사업을 분류하는 데 있어 '청년사업'을 분류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복지정책관실)

- ☐ 정부사업 중 '청년사업'을 따로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 첫째, 청년의 연령범위가 불명확하며,
 - 둘째, 연령 이외의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기초수급자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과 같이 사업대상 선정기준이 소득, 직업 등 연령이 아닌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정확한 청년의 숫자를 파악하기 곤란함

신보라 위원(자유한국당)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청년정책 소통채널
구축에 대한 계획은?

(사회복지정책관실)

-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청년종합정책을 수립중이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청년 전담조직 구성현황을 파악하고 청년시책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정책입안에 참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향후 중앙-지방 정부간 청년정책 협의체(가칭) 구성 등 다양한 소통채널 구축방안을 검토·협의를 계획합니다.

신보라 위원(자유한국당)

정부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게 진행중인지?

(사회복지정책관실)

- ☐ 위원님의 취지에 공감하며 현재 정부 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와 협의중이며,
 - 청년위원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각 부처에서 청년 관련 위원회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다만, 청년위원 비율 할당제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동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 및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서면답변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채익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요지

1. 빈집 활용 거주 공유제도의 근거법률 마련 여부

- ①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빈집정비사업으로 '빈집 활용 거주공유제도'가 운영할 수 있을지?
- ② '빈집 활용 거주공유제도'가 운영되더라도 수도권외의 빈 집 중 1년 이상 빈 집인 곳으로 미분양과 미입주가구를 제외하는 경우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③ '빈집 활용 거주공유제도'가 도입되기 위하여 별도의 근거법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답 변

- ①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을 대상으로 경수선(도배, 장판 교체 등), 리모델링, 철거, 재축의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 빈집정비를 한 뒤 빈집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청년과 거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빈집은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제외하고 있으나,
 - 통계청에 따르면 '15년 전체 빈집 107만호 중 미분양 주택 16만호 제외시 약 91만호로 추정됩니다.
- ③ 현재도 빈집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거주공유가 가능합니다.

작성자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시설사무관 조관우(☎ 044-201-3387)

*** 서면답변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신보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행복주택 입주자격 개선 내용 설명자료

(신보라 위원)

※ 작성자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사무관 이경민 (☎ 044-201-4514)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 행복주택 수혜계층 확대

①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만 19~39세 청년까지 확대

- (현 황) 현재 행복주택 입주계층은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제한하여 학교에 재학하거나 소득활동을 해야만 입주 가능
- (개정안) 대학생, 사회초년생 뿐만 아니라 만 19세 이상 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은 모두 입주기회를 제공

② 신혼부부 입주 자격 中 소득활동 기준 삭제

- (현 황) 소득활동 기준이 입주자격에 포함되어 오히려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계층이 입주가 어렵고 혼인기간(5년)이 다소 엄격
- (개정안) 신혼부부 자격 중 소득활동기준을 삭제하고, 입주 가능한 혼인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③ 청약가능지역 제한 완화

- (현 황) 신청자의 학교, 직장 등(거주지 제외)이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입주자격을 부여하여 청약기회를 제한

*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는 지역

- (개정안) 광역교통 발달 등을 고려하여 청약이 가능한 지리적 범위를 주택건설지역 소재 광역권*까지 확대하고, 청약 가능지역의 판단 기준에 학교·소득활동 지역뿐만 아니라 거주지도 포함

* 광역권 : ① 서울·인천·경기도 ② 대전·세종·충남 ③ 충북 ④ 광주·전남 ⑤ 전북 ⑥ 대구·경북 ⑦ 부산·울산·경남 ⑧ 강원

- 또한, 순위제를 신설하여 지역제한 없이 모두에게 청약 기회 부여